



이현 변호사의 법률 칼럼

## CCTV 설치, 기본권 침해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지난 봄,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괴한이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 폭행하는 장면이 CC TV에 찍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다. 그때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이 CC TV(폐쇄 회로 텔레비전)였다. 이를 계기로 공동 주택을 포함한 주택가에 CC TV를 비롯한 각종 보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글 이현(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지난 5월,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다 폐기됐던 '개인정보보호법'도 입법 예고됐다. 이 입법 예고안은 CCTV를 포함한 여러 장비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등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주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 전반의 개인 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개인 영상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및 그 해설서를 발간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을 규율했고, 현재 국내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 예고된 것처럼 어느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률 차원에서 규율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거리나 주택에서의 개인 안전을 위해 CCTV를 비롯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장비는 범행 발생 후 범인 색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설치 및 가동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행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최근 입법 예고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및 동 규칙에서는 공동 주택의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는 관리 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를 설치·관리하되, 대상 시설의 전체 및 주요 부분이 조망될 수 있고, 선명한 화질이 유지되며,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나오긴 했지만 위 규정 및 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 기본권 침해 우려, 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기기 설치해야

하지만 무절제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권리 침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초상권이고, 다른 하나는 사생활권이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비롯한 초상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돼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 이러한 보장을 초상권이라 하고,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인간존엄권과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사생활을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받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관리되지 않는 영

상 정보 처리 기기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비단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따른 초상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 공공 행정·정보통신·신용 등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라 개인 정보 처리 행위가 규율되던 것을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 정보 보호 원칙과 개인 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거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 통제 또는 교통 단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제정안 제24조 제1항).

또한 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피촬영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동조 제4항), 설치 목적 외에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동조 제5항), 개인 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해손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동조 제6항).

#### 단독 주택·공동 주택 중 제한된 장소 이외 설치 여부 검토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꼭꼭 보호하려는 법률이고, 주택건설기준은 다수의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따라서 개인 정보에 관한 개별 법령과 개인 영상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넘어 사생활 보호의 헌법 이념을 구축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환영할 만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주택건설기준의 모법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포괄 입법이기에 적어도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주택건설기준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공동 주택이나 주택가 인근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는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는 공동 주택 중 공용 부분 및 인근의 공공 장소를 감시하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다소 침해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허용에 근거가 되는 법령인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은 공동 주택의 승강기·놀이터 및 출입구에서만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단독 주택 내 설치 여부 및 공동 주택 중 제한된 장소 이외의 설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집행 방법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